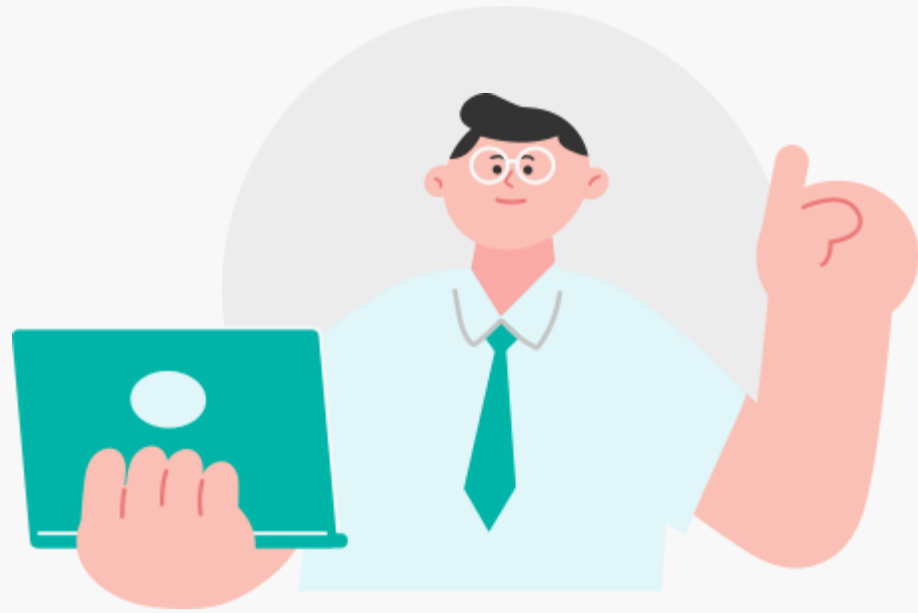


2 4년제 대학교

신청자 2차 구비서류



국가시험 일정

합격예정자 발표: 26. 2. 19.(목)

응시자격서류제출: 26. 2. 19.(목)~3. 11.(수)

최종합격자 발표: 26. 3. 25.(수)

2차 구비서류 제출: 졸업일로부터 1주일 이내

*** 25. 2. 27.(금)까지 제출요망**

▶2차 서류 2026년 2. 27.(금) 까지 제출	졸업 예 정 자 (학생)	1급 합격예정자	추가 서류 없음	
		1급 국가시험 미응시자 (2급신청자) & 1급 국가시험 필불합격자	졸업증명서 1부	- 90일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 가능 - 졸업예정증명서도 제출 가능 ※ 90일 이내 발급받은 원본 서류 제출
			성적증명서 1부	- 90일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 가능 - <u>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이 성적증명서에서 확인되어야 함</u> - <u>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국립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</u>
			외국인(외국국적자) 추가 제출 서류	가. 외국인(재외국민인) 경우 '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' 또는 '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' 해당서류 1부 나. 결격사유조치 서류 1부 :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번역·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:국가별 제출서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 가능
		행정담당자(조교)	신청접수명부	1차에 제출한 신청접수명부 순서대로 2차 구비서류 정리 요망

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

- 1 2차 서류 제출 X
- 2 합격예정자발표 이후 응시자격서류 제출
- 3 최종합격자발표 이후 일괄 접수 예정

1급 국가시험 미응시자 및 불합격자, 2급 신청자

- 1 2차 서류 제출 O
- 2 2차 서류 도착 이후 일괄 접수 예정

2 4년제 대학교 신청자 2차 구비서류

※필수 서류 참고 사항

#각종 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'원본, 사본' 구분 안내

사회복지사자격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'원본'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
아래 내용 참고 후 원본 출력에 어려움 없으시길 바랍니다!

① 금액 결제 후
인터넷 상 바로 출력 시

인 정
원본

② 금액 결제 후
바탕화면 저장 후
PDF 파일로 출력 시

인정불가
사본

② 번 방법으로 출력 시 서류 하단에 아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.
반드시, 꼼꼼히 확인 후 '원본'의 서류로 구비 바랍니다.

본 증명서는 전자증명서(PDF파일)로 발급되었습니다. 전자증명서는 출력시 출력물은 사본으로 인정됩니다.
전자증명서 확인용 전용뷰어가 아닌 경우 진본 여부 및 전자서명을 확인 할 수 없으며 진본여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.
전자증명서 확인용 전용뷰어는 www.certpia.com/down 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.

②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부.

#'최종학력증명서' 증빙 인정 서류

아래 내용 참고 후 서류 인정에 차질 없도록 확인 바랍니다!

인 정

■4년제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

해당 증명서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

※관련법:「고등교육법」시행령 제70조(학력인정)제1항제1호

인정불가

■전문대학 졸업예정 증명서

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것뿐 졸업하여 해당 학력을 소지했다고 볼 수 없음

인정불가

■수료증명서

취득 학점별 학년 구분에 의한 수료 사실 증명서류로 학력(학위)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없음

<유사판례>2003헌마173(05.11.24)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

2 4년제 대학교 신청자 2차 구비서류

※필수 서류 참고 사항

#각종 증명서 '유효기간' 구분 안내

증명서 상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인터넷 출력시 출력 일자에 따라 서류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.
제출용도의 서류는 해당 유효기간에만 유효하오니 아래 예시 참고 바라며,
한국사회복지사협회(서울) 도착 후 심사 시작 일자 기준으로 반드시, 넉넉한 기간의 서류로 보내주세요!



인터넷 발급(3개월 유효)

해당 서류는 인터넷 출력본으로서
유효기간은
2020년 9월 30일(3개월)
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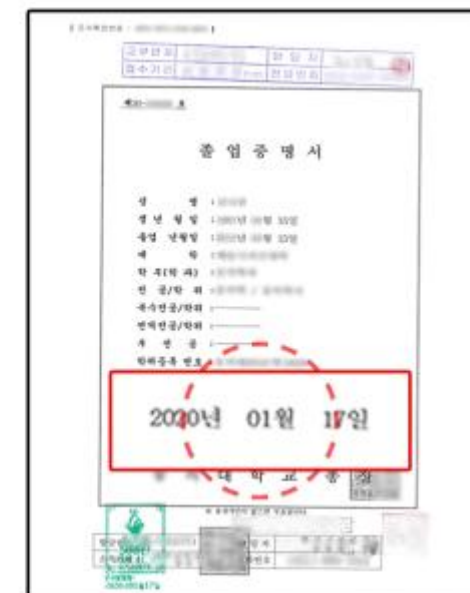


해당 서류는 인터넷 출력본으로서
유효기간은
2020년 10월 1일(3개월)
입니다.

※필수 서류 참고 사항

#각종 증명서 '유효기간' 구분 안내

증명서 상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인터넷 출력시 출력 일자에 따라 서류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.
제출용도의 서류는 해당 유효기간에만 유효하오니 아래 예시 참고 바라며,
한국사회복지사협회(서울) 도착 후 심사 시작 일자 기준으로 반드시, 넉넉한 기간의 서류로 보내주세요!



주민센터 발급(6개월 유효)

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서류는
[교부기관 처리인]+[해당 면·동장
직인]이 찍혀있는 서류로서,
해당 서류의 유효기간은
2020년 7월 17일(6개월)입니다.



대학교 무인발급기(3개월 유효)

대학교 무인발급기에서 출력한
서류의 경우 인터넷 출력본과
동일하게 인정되며,
해당 서류의 유효기간은
2020년 7월 1일(3개월)입니다.